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6 제10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사회 통합

변제자 대위권과 보증인 간의 대위권 행사

지문 평가

(가)에서 '변제자 대위권'에 대해 살펴본다면, (나)에서는 이를 보증인 간에 행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복합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전부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이는 최근 평가원의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공부해 두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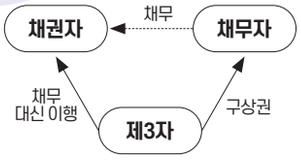
(가) 사회 – 법학 – 변제자 대위권
채무, 구상권, 변제자 대위, 변제자 대위권, 담보권, 법정 대위, 임의 대위
(나) 사회 – 법학 – 보증인, 담보권
담보, 보증인, 물적 담보, 물상 보증인, 민법 제482조, 담보물 가액 비례, 인적 담보, 인적 담보 보증인, 인원수 균등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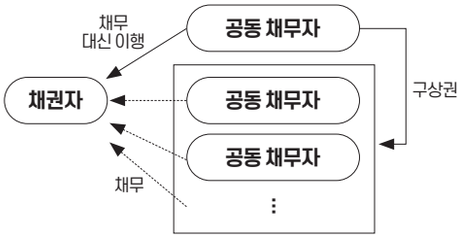
(가) 문단 1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그런데 제3자나 공동 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나 다른 공동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때 그 변제로 인한 손실의 상환을 채무자나 다른 공동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한다.

➡ 제3자 혹은 공동 채무자 중 누군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 혹은 다른 공동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기 때문이다.

➡ 이는 변제자에게 불공평한 일이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구상권'이라고 한다.





2) 돈을 대신 갚아 준 사람은 공평의 관점에서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 '구상권'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다.

맥락 잡기 첫 문단에서는 지문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구상권'이 관건인 만큼,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것이 법학 지문의 가장 전형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가) 문단 2 변제자 대위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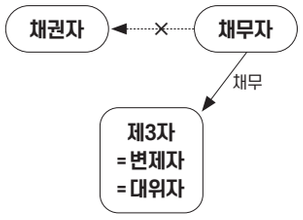
1) 우리 민법은 구상권을 실현할 수단으로서의 권리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변제자 대위 제도를 두고 있다.

➡ 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은 일종의 권리이지만, 그것만으로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어서 '변제자 대위'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2) **변제자 대위**란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종래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변제자에게 이전된 권리를 **변제자 대위권**이라 한다.

➡ 가령 제3자가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는 구상권을 갖는다. 이때 변제자[→ 제3자]는 구상권을 실현하기 위해 '변제자 대위권'을 갖는데, 이는 채권자가 기존에 갖던 채권이 대위자[→ 변제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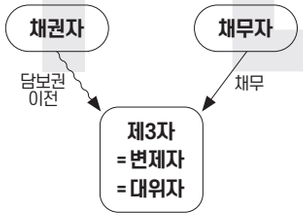
주목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대위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구상권이 실현된다.



3) 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채권이 소멸하지만, 그 원채권은 물론 채무가 이행되지 못할 때를 상정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한 권리인 **담보권**도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 변제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그 대신에 채무자는 대위자에게 그와 동일한 채권[→ 원채권]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여기까지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

주목 '담보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설명은 새롭다. 채무자는 그 채권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게 된다. 즉 채권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담보권까지도 대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가) 문단 3 경합의 상황

1) 변제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그 대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이른바 청구권의 경합이 생긴다. 다만 변제자 대위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원채권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상권과 원채권은 주종 관계에 있는 경합을 이룬다.

➡ 맥락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다. 애당초 변제자 대위권은 구상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문단2-1)]. 그렇기 때문에 변제자 대위권에 속하는 원채권은 구상권의 하위에 있는 청구권이 된다. 구상권과 원채권은 경합하되, 구상권이 '주'를 이루고 원채권은 '종'을 이룬다.

2) 구상권이 소멸되면 원채권은 소멸되며, 법률상 효과가 인정되는 기간인 시효가 끝나는 등의 이유로 원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 역시 소멸된다.

주목 원채권은 구상권의 하위에 있고, 원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된 담보권은 다시 원채권에 종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 원채권 > 담보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가) 문단 4 변제자 대위의 성립 요건

1) 변제자 대위는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점, 구상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 변제자 대위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다. 법학 지문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들이니, 의식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2) 그 밖에 대신 변제함으로써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법정 대위'**에 속하거나, 이익은 없지만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하는 **'임의 대위'**에 속해야만 한다. 법정 대위는 주로 공동 채무자나 담보 제공자 등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손실을 보게 되는 자가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 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이 변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관련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 '법정 대위'와 '임의 대위'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정 대위'는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신 변제하는 경우를 말한다면, '임의 대위'는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함
- 변제자가 구상권을 가져야 함
- 법정 대위 또는 임의 대위에 속해야 함

(나) 문단 1 보증인 상호 간의 변제자 대위권 행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는 채무자 본인 외에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는데, 채무를 보증하는 제3자가 여럿이면 **보증인** 상호 간에 변제자 대위권이 행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담보'는 채무가 이행되지 못할 때를 상정하여 채무자가 맡겨 둔 것을 뜻한다. 변제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면 구상권에 의해 변제자 대위권을 갖게 되므로, 원채권은 물론 '담보권'도 변제자[→ 대위자]에게 이전된다[(가)의 문단2-3)].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가)에서 이해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나)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가)에서 살핀 '변제자 대위권' 개념을 보증인 상호 간에 행사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문단 2 물상 보증인

1) 예컨대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6천만 원을 빌릴 때 제3자인 A와 B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자.

➡ 보증인 상호 간에 변제자 대위권이 행사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자.

2) 이처럼 동산,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되는 것을 **물적 담보**라고 하며,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A가 6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하자. 그러면 A는 원채권은 물론 담보권까지 이전받게 된다. 이때 A는 B의 토지에 대해 어느 한도까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A, B는 '물상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A는 자신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즉 이는 '법정 대위'에 속한다[(가)의 문단4-2)].

➡ 이때 A는 다른 물상 보증인인 B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자인 A에게는 담보권도 함께 이전되는데, 그렇다면 B에 대한 담보권도 A가 대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구체적인 질문이 주어진다면 항상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지문을 읽어 나가야 한다. 즉 '대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문단 3 물상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면 채권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금전을 취할 수 있지만, **민법 제482조**는 대위 변제한 이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위 관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상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에 변제자는 다른 물상 보증인에 대해 **'담보물 가액 비례'**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A와 B의 토지 가액이 각각 7천만 원과 3천만 원이었다면, A는 B의 토지에 대해 변제액의 30%인 1천 8백만 원까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 물상 보증인인 A, B는 각각 가액이 7천만 원, 3천만 원인 담보물을 제공했다. 이는 곧 A가 담보물 총액의 70%를, B가 담보물 총액의 30%를 부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 그렇다면 A는 B에 대해서 '변제액의 30%'까지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애초에 A가 담보물의 70%를 부담했으니, 나머지 '변제액의 70%'는 A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주어진 예시를 토대로 '대위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일반화된 수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물상 보증인 A의 담보물 가액 : ⓐ
- 물상 보증인 B의 담보물 가액 : ⓑ
- A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변제액 × $\frac{ⓐ}{ⓐ+ⓑ}$
- B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변제액 × $\frac{ⓑ}{ⓐ+ⓑ}$

(나) 문단 4 인적 담보 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1) 물적 담보와 달리 **인적 담보**는 담보물을 특정하지 않고 금전을 포함한 보증인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삼는 것으로, **인적 담보 보증인**은 자신의 일반 재산으로 채무 전체를 보증한다.

➡ 물적 담보와 구분하여 '인적 담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 담보는 물적 담보와 달리 '특정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다만 인적 담보 보증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 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인적 담보의 여러 보증인 중의 하나가 변제자 대위권을 갖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변제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해 **'인원수 균등 비례'**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가령 인적 담보 보증인이 5명이면 변제자는 각 보증인에 대해 변제액의 1/5의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인적 담보 보증인이 N명이라면, 이들이 각각 보증하는 채무의 비율은 1/N이 된다. 이는 대위 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서 보증인 중 하나가 대위자가 되면 나머지 보증인들에 대해서 1/N의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나) 문단 5 인적 담보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함께 있는 경우

1) 인적 담보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함께 있는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까지 인원수에 포함하여 인원수 균등 비례에 따라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

➡ 인적 담보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대위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을 사실상 인적 담보 보증인으로 취급하게 된다.

➡ 가령 물상 보증인이 1명, 인적 담보 보증인이 3명이라면 총 4명이 되고, 이때 각각의 대위 한도는 1/4로 동일하다.

2) 다만 물상 보증인이 두 명 이상이면 먼저 전체 인원에 대해 인원수 균등 비례를 적용하여 인적 담보 보증인에 대해서만 대위 한도를 정한 후, 그 나머지 변제액에 대해 담보물 가액 비례에 따라 각 물상 보증인들에 대한 대위 한도를 정한다.

➡ 이번에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가령 물상 보증인이 2명, 인적 담보 보증인이 3명이라고 하자. 총 5명이므로 인적 담보 보증인 각각은 변제액의 1/5씩으로 대위 한도가 정해진다.

주목 다만 '물상 보증인'의 경우 이들의 총 대위 한도인 변제액의 2/5만큼을, 다시 '담보물 가액 비례'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문단3].

- 인적 담보 보증인 3명 + 물상 보증인 2명
- 물상 보증인 A의 담보물 가액 : ⓐ
- 물상 보증인 B의 담보물 가액 : ⓑ
- 인적 담보 보증인의 대위 한도 = 변제액 $\times \frac{1}{5}$
- A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frac{2}{5} \times$ 변제액 $\times \frac{ⓐ}{ⓐ+ⓑ}$
- B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frac{2}{5} \times$ 변제액 $\times \frac{ⓑ}{ⓐ+ⓑ}$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금전 9천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 X에서 갑, 을, 병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이다. 갑은 과수원을, 을은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그중 과수원의 담보물 가액은 6천만 원이다.

➡ 대위 한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갑의 담보물 가액은 6천만 원이고, 을의 담보물 가액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병은 담보물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상 보증인일 수도, 인적 담보 보증인일 수도 있다.

2) 추후 X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갑의 과수원에 대한 담보권을 근거로 과수원의 매각을 강제 집행하려 했고, 이에 갑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9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렇게 구상권을 취득한 갑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제외하고 을과 병을 상대로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려 한다. (단, X에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없으며, 갑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갑, 을은 '물상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갑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즉 이는 '법정 대위'에 속한다[(가)의 문단4-2)].

➡ 이때 갑은 을, 병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자인 갑에게는 담보권이 함께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위 한도는 병이 물상 보증인인지, 인적 담보 보증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먼저 병이 '물상 보증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나)의 문단3].

- 갑의 담보물 가액 : 6천만 원
- 을의 담보물 가액 : ⓐ
- 병의 담보물 가액 : ⓑ
- 을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9천만 원 $\times \frac{ⓐ}{6천만\ 원+ⓐ+ⓑ}$
- 병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9천만 원 $\times \frac{ⓑ}{6천만\ 원+ⓐ+ⓑ}$

➡ 병이 '인적 담보 보증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나)의 문단5-2)].

- 갑의 담보물 가액 : 6천만 원
- 을의 담보물 가액 : ⓐ
- 인적 담보 보증인 병의 대위 한도 = 9천만 원 $\times \frac{1}{3}$
- 을의 담보물의 대위 한도 = $\frac{2}{3} \times$ 9천만 원 $\times \frac{ⓐ}{6천만\ 원+ⓐ}$

∴ 갑, 을이 물상 보증인이고 병이 인적 담보 보증인이라면 을에 대한 대위 한도는 '6천만 원 × ⓐ/(6천만 원 + ⓐ)'인데, 'ⓐ/(6천만 원 + ⓐ)'는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을에 대한 대위 한도는 항상 6천만 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인문

조선 시대의 '공' 이념의 한계와 의의

지문 평가

조선 시대의 '공' 이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체적인 서술이 압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Keyword

인문 – 한국사 – 경장론

공, 군신공치론, 군신분의론, 손상익하, 절용, 궁부일체, 내수사, 호조, 진휼, 양입위출, 대동법, 균역법

문단 1 조선 시대 '공' 담론의 변화

1) 조선의 지배층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내세운 이념으로 공공성을 뜻하는 **'공(公)'**이 있다. '사(私)'와 대비되는 '공'은 공평과 같은 도덕 원칙이자,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론인 경장론의 원칙이기도 하였다.

➡ 조선의 지배층이 내세웠던 '공' 이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 이념이 단순한 '도덕 원칙'이 아니라 '개혁론의 원칙'이기도 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백성의 삶을 위하는 구체적인 '현실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17세기까지만 해도 '공' 담론은 군신이 함께 다스린다는 **군신공치론**에 입각하여 신하가 왕에게 공적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나타났으나, ……

➡ '군신공치론'은 군신, 즉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통치한다는 관점이다. 바꿔 말해 신하의 발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 이념 역시 신하가 왕에게 요구하는 차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3) …… 군신의 역할이 다름을 강조하는 **군신분의론**이 힘을 얻은 영·정조 대에 이르러서는 왕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왕이 제도 개혁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 반면 '군신분의론'은 왕과 신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신하의 조언보다는 왕의 권위를 중시하는 관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영·정조 대에 이르러서는 '공' 이념 역시 왕이 주도하는 '개혁론의 원칙'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맥락 짚기 첫 문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초점이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는 좀 더 읽어 봐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공'이 제도 개혁을 위한 원칙이라는 점과 그것이 '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자.

문단 2 손상익하의 원칙

1) 18세기 중반 이후 영·정조 대[→ 군신분의론]에 '공'을 현실 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최우선의 원칙으로, 윗사람에게 해를 끼쳐 아랫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손상익하(損上益下)'**가 있다. 이는 국가의 중앙 재정을 확장하지 않음으로써[→ '손상'] 백성에게 '부(富)'가 돌아가도록[→ '익하'] 한다는 것인데, ……

➡ '손상'은 윗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뜻이며, '익하'는 아랫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뜻이다. 즉 '손상익하'는 지배 계층이 희생한 부를 백성에게 재분배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 백성에게 재물을 직접 주어 영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공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애초부터 과도하게 세금이 걷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손상익하'의 핵심은 제도적으로 백성의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의 중앙 재정은 줄어들지만[→ 손상], 반대로 백성의 입장에서는 줄어든 세금만큼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익하].

3) 이 원칙의 실현은 중앙 재정의 규모와 지출을 줄이는 **'절용(節用)'**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궁부일체(宮府一體)'와 '양입위출(量入爲出)'이 강조되었다.

➡ '손상익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중앙 재정의 규모와 지출을 줄이는 '절용'[→ 손상]이 주어졌다. 또한 절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서 '궁부일체', '양입위출'이 주어졌다. 각각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궁부일체, 양입위출
⇩
절용[→ 손상]에 따른 익하 달성[→ 손상익하의 실현]
⇩
'공' 이념 실현

문단 3 궁부일체와 양입위출

1) **'궁부일체'**란 왕실을 뜻하는 궁중과 정부 관료 조직을 뜻하는 부중이 하나라는 뜻으로, '공'을 위해 왕실 재정을 중앙 재정의 틀 안에서 운영토록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 '궁중=왕실', '부중=관료 조직'으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을 하나로 본다는 '궁부일체'는 결국 왕실과 관료 조직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왕실=관료 조직'이라면, '왕실 재정=중앙 재정'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 '왕실 재정'을 중앙 재정에 포섭시킴으로써, 전체 재정의 규모를 줄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즉 왕실을 위한 별도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특히 정조의 경우 '사'로 규정되어 온 왕실 재정의 운영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내수사**에서 중앙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로 이전하였고, 내수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흉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진휼** 등 공적인 지출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 정조 이전에는 왕실 재정이 '공'이 아닌 '사'로 규정되었다. 즉 '내수사'는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역할을 '호조'로 넘겼다는 것은 '왕실 재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중앙 재정'의 일부로 보겠다는 뜻이다.

주목 다만 내수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을 호조로 넘겼을 뿐이지 여전히 그 고유의 업무는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것마저도 '진휼'과 같은 '공적인 지출'에 치중하도록 변화하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양입위출'**은 세수에 맞추어 지출을 줄이는 원칙으로, 지출에 맞추어 세수를 확보하는 '양출위입'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와 정조는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는 '손상'[→ 절용]을 통해 '익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 만약에 '양출위입'에 따라 지출에 맞추어 세금을 거둔다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세금이 걷히지 않도록 하는 '손상익하의 원칙'이 실현될 수가 없다[문단2-2)].

➡ 반면 '양입위출'에 따라 세수에 맞추어 지출을 줄인다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억제된다. 즉 애초부터 정한 만큼의 세금이 걷히게 되고, 그에 따라 '손상익하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주목 즉 '양입위출'의 관건은 중앙 재정의 지출을 억제하는 '손상'에 있다. '손상'은 '과도한 세금의 억제'로 이어지므로 '익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문단 4 '공'의 실현을 어렵게 한 요인들

1) 그런데 '양입위출'의 달성은 쉽지 않았다. 제도상 허점 등의 이유로 백성의 부담이 줄지도 않았고 중앙의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양입위출'의 달성은 손상익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문단3–3]. 다만 실제로는 양입위출이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을 따져 보고,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특히 특산물 대신에 쌀로 내도록 한 **대동법**이나 군역 대신에 지불하는 군포를 경감하고자 한 **균역법**이 중앙 재정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손상익하'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 중앙 상납분과 지방 유치분을 동일하게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백성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몫인 지방 재정이 악화되어 '익상'이라는 비판까지 받은 것이다.

➡ '대동법'과 '균역법'은 모두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들이다. 각각 특산물과 군포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다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손상익하'를 실현하지 않고 '중앙 재정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즉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익상'으로 이어졌다[→ '손상익하'가 아닌 '익상손하'].

➡ 이는 손상익하 원칙이 실현되려면 '중앙 상납분'과 '지방 유치분'이 동일해야 했는데, '중앙 상납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 유치분'이 줄어듦에 따라 '익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 중앙 상납분 = 지방 유치분 ⇨ 손상익하의 실현
> 중앙 상납분 > 지방 유치분 ⇨ 익상손하의 실현

3) 한편 토지의 사적 소유가 늘면서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이 퇴색함에 따라 백성의 소득 자체가 균등해지는 정책을 통해 '공'을 실현하는 일은 무망한 일이 되었다.

➡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백성의 소득이 균등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손하'로 인해 백성들 전반이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의 부의 불균형도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4) 그저 세금을 균등히 부과하는 균부(均賦) 조치나 진휼책의 강화에만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그에 따라 소득 자체가 균등해지는 '공'의 실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세금을 균등하게 부과하거나 구휼에 힘쓰는 제한적인 조치들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목▲ 즉 영 · 정조 대의 '손상익하' 정책은 백성의 소득 자체가 균등해지는 '공'의 실현이 아니라 균부와 진휼 차원의 '공'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본래적 한계를 갖고 있다.

문단 5 조선 후기 '공' 이념의 한계와 의의

1) 조선 후기의 '공' 이념은 이렇듯 제도 개혁의 뚜렷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에는 기여하였다. 이는 18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조선이 체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였다.

주목▲ '공' 이념의 한계와 의의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양입위출'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문단4–1], 소득 자체가 균등해지는 정책을 통한 '공'의 실현은 무망했으므로[문단4–3], 진정한 '공'의 실현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사의 공적 지출을 늘리고[문단3–2], 균부 조치나 진휼책의 강화에 힘을 쏟은 것은[문단4–4] 당장의 어려운 백성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2) 다만 '공' 이념의 강조가 진정한 의미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개혁으로 이어지기보다 왕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된다.

➡ '공' 이념의 또 다른 한계를 지적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 이념의 강조가 왕의 위상을 제고하는 '군신분의론'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였음을 함의한다[문단1–3].

<보기> 분석

<보기>문단

○ **갑** : 세상의 넓은 땅과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뜻이 있어 '사'를 행한다. 잘 다스리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공평무사하게 적용[→ '공']하여 기강을 세움으로써 이들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

➡ '사'와 '공'을 대비하면서, '공'이란 하늘의 이치를 공평무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공'을 통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조선 시대 지배층의 관점에 부합한다[문단1–1].

○ **을** : 토지에서 나는 것[→ 부(富)]은 원래부터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위에 있다. '손상익하'가 어찌 위의 사람이 재물을 주어 사람마다 기쁘게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백성에게 거두는 것[→ 세금]에 제도가 있을 따름이다.

➡ 토지에서 나는 '부'가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윗사람이 부를 포기하면 아랫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즉 '손상'에 의해 '익하'가 실현된다는 점을 함의한다[문단2–1].

➡ 즉 애초부터 '부'는 백성들에게 있으므로, 백성에게 거두는 세금 제도를 잘 손보면 '손상익하'는 실현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의성이 배제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영 · 정조 대의 이해와도 일치한다[문단2–2].

○ **병** : 지주[→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이들도 기실 공적인 땅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그곳의 산물로 납세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적인 세금의 10배나 되는 사적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치와 왕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지주들에 의해 과도한 '사적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사적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백성의 소득 자체가 균등'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공'이 실현될 수도 없게 된 것이다[문단4–3].

주목▲ '병'의 견해는 문단4–3에 대한 이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의 보완된 설명을 참고로 지문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법도 익숙해져야 한다.

∴ '공적 차원의 균부'는 공적 세금을 균등히 부과하는 조치를 가리킨다[문단4–4]. 토지의 사적 소유가 늘어 가는 상황에서도 균부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인해 공적 차원의 균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병'의 견해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병'의 견해는 공적 차원의 균부, 즉 균등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더라도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인해 백성의 소득 자체가 균등해질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⑤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 더 나아가 '익상'이라는 비판도 부적절하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익상'과는 관련이 없다. '병'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부의 불균형에 대해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문단4–3]. 이는 손상익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결과로서의 한계가 아니라, 손상익하 그 자체의 한계에 해당한다. 즉 애초에 '공'의 실현이 무망했다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과학

메틸화로 인한 DNA 손상과 복구 기전

지문 평가

염기의 메틸화로 인한 DNA 손상'과 이를 복구하는 기작, 그리고 이 기작이 억제되는 원인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과학 지문이다. 과학 지문을 읽을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글이니, 마지막까지 잘 연습해 두자.

Keyword

과학 – 생물학 – DNA 메틸화

메틸기, DNA, MGMT, 염기, 구아닌(G), 메틸 구아닌(mG), DNA 중합 효소, 상보성, 아데닌(A), 티민(T), 사이토신(C), 전사 인자, RNA 중합 효소, MGMT 전사 복합체, 프로모터, 자살 효소, 메틸 사이토신(mC), 사이토신 메틸화, 유전자 각인, DNA 메틸화 효소(DNMT)

문단 1 DNA의 손상과 복구

1) 축산 가공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색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메틸기**에 의해 DNA가 손상될 수 있다. 특히 DNA에서 단백질의 합성 정보가 담겨 있는 유전자가 손상되면 각종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 DNA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 정보가 담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DNA 손상'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 아질산염의 과다 섭취는 '메틸기'에 의한 DNA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탈메틸화 효소의 하나인 **'MGMT'**는 이렇게 메틸기에 의해 손상된 DNA를 자연적으로 복구한다.

맥락 짚기 어떤 문제 상황을 식별했다면 그 원인을 의식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MGMT에 의한 DNA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 문제 상황 : DNA 손상
- 문제 원인 : 메틸기
- 해결 방안 : 탈메틸화 효소 MGMT

문단 2 메틸기에 의한 DNA 손상

1) 아질산염에서 떨어져 나온 메틸기는 DNA를 이루는 **염기**들 중 **구아닌(G)**과 결합하여 G를 **메틸 구아닌(mG)**으로 전환시키는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 상태에서 DNA가 복제되면 염기 서열이 변화될 수 있다.

➡ 문제 상황에 대한 상술이다. G는 메틸기와 결합하여[→ G의 메틸화] mG로 바뀌는데, 이것이 곧 'DNA 손상'에 해당한다. '염기 서열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 DNA가 복제될 때에는 DNA를 이루고 있던 염기 서열 두 가닥이 분리되면서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가닥이 생성된다. **상보성**이란 염기들 중 **아데닌(A)**과 **티민(T)**끼리만, G[→ 구아닌]와 **사이토신(C)**끼리만 결합하는 성질이다. DNA 중합 효소는 원래 기존 가닥에 G가 있을 때에 새로운 가닥에 C를 생성하여 이들이 서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 DNA의 복제는 '상보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A는 T와 결합할 수 있고, G는 C와 결합할 수 있는 원리를 가리킨다.

➡ 그렇기 때문에 DNA의 복제 과정에서는 기존의 가닥에 G가 있을 때, 그 맞은편 새로운 가닥에는 '상보성'에 따라 다른 염기들이 아닌 C가 생성되는 것이다.

3) 그런데 DNA 중합 효소는 mG와 C의 결합 구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A와 T의 결합 구조와 유사한 mG와 T의 결합 구조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새로운 가닥에 C 대신 T가 생성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주목 다만 메틸기로 인해 mG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맞은편 새로운 가닥에 C가 아닌 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기 서열의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각종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문단 3 MGMT에 의한 DNA 복구

1)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에서는 DNA에서 mG가 증가할 때에 먼저 MGMT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가 **RNA 중합 효소**와 결합하여 **MGMT 전사 복합체**를 형성한다. DNA에서 MGMT 유전자의 앞에 위치하면서 그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 부위에 이 전사 복합체가 결합하고, 이를 통해 MGMT 유전자가 발현되면 MGMT가 다수 생성된다.

➡ DNA 손상의 해결 방안인 MGMT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아질산염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G의 메틸화'는 MGMT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 MGMT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제시되었으니 순차적으로 정리해 두자.

mG ↑
⇩
MGMT 전사 복합체[→ 전사 인자 + RNA 중합 효소] 형성
⇩
MGMT 프로모터에 결합
⇩
MGMT 유전자 발현
⇩
MGMT 생성

2) MGMT는 메틸기와 결합하는 정도가 G보다 더 강해서 mG로부터 메틸기를 빼어 와 자신이 메틸화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MGMT는 자신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에 메틸기가 결합함에 따라 불활성화된 후 분해되어 제거된다.

주목 MGMT에 의해 어떻게 DNA의 손상이 복구되는지에 관한 설명이다. 메틸기로 인한 mG가 문제의 원인이었으니, mG로부터 메틸기를 빼앗아서 다시 G로 바꾸는 것이다[→ mG의 탈메틸화]. 그렇다면 원인이었던 '메틸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DNA의 손상도 복구된다.

3) 보통의 효소들이 역할을 마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달리 MGMT는 제거된다는 점에서 **자살 효소**라 불린다.

➡ MGMT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G 대신에 메틸화된 MGMT는 역할을 다한 후 제거된다는 점에서 '자살 효소'라고도 한다.

문단 4 MGMT 유전자의 발현 억제

1) 그런데 체내에서 메틸기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방사선 등의 자극이 DNA에 가해지면 MGMT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기도 한다.

➡ MGMT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면 MGMT도 생성될 수 없다. 즉 해결 방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MGMT 유전자의 앞에 있는 프로모터에는 CpG 섬(= DNA에서 C와 G가 연달아 나타나 이루는 CpG가 밀집된 부위)이 존재하는데, CpG 섬의 C가 메틸화되어 **메틸 사이토신(mC)**이 형성되면 MGMT 전사 복합체와 프로모터 사이의 결합이 저해되는 것이다.

➡ G가 아닌 C가 메틸기와 결합하여 mC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MGMT 프로모터의 CpG 섬에 mC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MGMT의 생성이 억제된다. 앞서 정리한 MGMT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야 한다[문단3–1)].

➡ '메틸기'가 작용한 결과인 mG와 mC를 구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mG는 MGMT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mC는 그 MGMT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mG로 인한 DNA 손상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MGMT 프로모터에 mC 형성
⇩
MGMT 유전자 발현 ×
⇩
MGMT 생성 ×
⇩
mG의 탈메틸화 ×
⇩
DNA 손상 복구 ×

3) 이러한 **사이토신 메틸화**는 본래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DNA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 유전자 중 한쪽의 발현이 억제되는 **'유전자 각인'**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는 **DNA 메틸화 효소(DNMT)**가 비타민 B 복합체의 대사산물로부터 메틸기를 분리하여 CpG 섬의 사이토신에 결합시킴에 따라 일어난다.

맥락 짚기 ⧗ 모든 '사이토신 메틸화[→ mC 형성]'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도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는 DNMT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부의 대사산물로부터 '메틸기'를 얻는다. 이를 통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DNA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 가령 부모가 물려주는 두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발현을 억제하는 '유전자 각인'도 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에 속한다.

4) 이와 달리 MGMT 유전자의 발현 억제는 비타민 B 복합체나 DNMT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하기도 한다.

➡ '비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DNA 손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암세포의 증식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	비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
방식	프로모터에 mC 형성 ⇨ 유전자의 발현 억제	
메틸기	비타민 B 복합체의 대사산물로부터 얻음	메틸기 과다 증가, 방사선
결과	DNA 안정	DNA 복구 × ⇨ 암세포 증식

<보기> 분석

<보기 1>문단

사이토신 메틸화는 암의 유발이나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암세포 DNA에서의 mC의 양은 역설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 그룹의 암환자들의 경우 암세포 DNA에서의 mC의 양이 정상 세포 DNA에서의 mC의 양보다 많지만, ⓑ다른 그룹의 암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적은 것이다. 전자의 경우 mC가 MGMT 유전자의 앞에 위치한 프로모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후자의 경우 유전자 각인이 덜 일어나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지 못함에 따라 암이 유발된 것이다.

맥락 짚기 ⧗ '사이토신 메틸화'와 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다. 여기서 ⓐ, ⓑ의 원인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먼저 ⓐ의 암세포에는 MGMT 프로모터에 mC가 다수 형성되었다. 이는 곧 MGMT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로 인해 'DNA 손상'이 복구되지 못함에 따라 암세포가 증식한 것이다[문단4–2)]. 따라서 이는 '비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에 해당한다.

➡ 반면 ⓑ의 암세포에서는 mC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유전자 각인이 덜 일어났다. 즉 '정상적인 사이토신 메틸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DNA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암세포가 증식한 것이다[문단4–3)].

유전자 각인↓ ⇨ DNA 안정↓ ⇨ 암세포 증식

<보기 2>문단

1) 항암 치료에 쓰이는 가상의 약물 X는 다량의 메틸기로 암환자의 암세포 DNA에서 G를 mG로 활발히 전환함에 따라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단, 암환자의 정상 세포에서는 mG로의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X는 의도적으로 암세포에만 '메틸기↑ ⇨ G의 메틸화'를 유발함으로써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즉 이번에는 'DNA 손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2) 적정량의 약물 X를 ⓐ와 ⓑ에 각각 투여해 보면, 그 결과 [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에 X를 투여하면 mG가 늘어남에 따라 MGMT가 생성되어야 한다. 다만 ⓐ의 경우에는 그 발현이 억제되는 만큼 MGMT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다. 즉 DNA 손상이 복구되지 못하므로 ⓐ의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사멸된다.

주목 ⧗ ⓑ에 X를 투여하면 mG가 늘어남에 따라 MGMT가 생성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DNA 손상이 복구되는 만큼, ⓑ의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사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mG를 G로 전환하는 효소'는 MGMT를 가리킨다. MGMT는 ⓐ에서는 생성이 억제되지만, ⓑ에는 다수 생성된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X는 ⓐ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DNA 손상이 세포의 사멸로 이어지는 대신에, MGMT에 의해 복구되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7] 고전시가

(나) 「만언사」

– 안도환 –

수록 지문 평가

사대부 양반이 아닌 중인의 유배 가사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작품이다. 작가는 정조 때에 임금의 심부름을 하는 대전별감으로 있다가 죄를 지어 추자도에 유배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중에서 화자가 추자도 귀양살이를 시작한 것은 보리 수확 철인 여름이고, 수록 지문의 '중략' 앞부분은 귀양 온 이듬해의 봄이며, '중략' 뒷부분은 귀양 온 이듬해의 여름에 해당한다.

방초(芳草)는 무성한데 봄 새소리 들리거늘

➡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다.

참고 「만언사」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 관직 생활과 유배의 경위,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유배지의 생활을 말하다가 죄를 용서받기 바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유배지의 생활은 '여름–가을–겨울–봄–여름'의 순서로 서술된다. 그러므로 봄철의 유배 생활을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은 작품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낮잠에서 일어 앉아 창문을 열쳐 보니

창가의 몇 송이 꽃 웃는 듯 반기는 듯

➡ 봄꽃을 대하는 화자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밝아지고 있는 것을, 꽃이 화자를 보며 '웃는 듯 반기는 듯'하다고 표현했다. 화자의 감정을 대상인 '꽃'에 투영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갑다 저 꽃이여 예(= 예전에) 보던 꽃이로다

➡ 화자는 유배지에서 보고 있는 봄꽃이 예전에 본 봄꽃과 같은 꽃이라고 말한다. '꽃'이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낙양(= 옛날 중국의 도성. 여기서는 조선의 도성인 한성) 성중에 저 봄빛 한 가지(= 형태, 성질, 동작 따위가 서로 같은 것)로

고향 동산에 이 꽃이 피었는가

➡ 화자는 예전에 자신이 대전별감으로 있던 서울에도 유배지와 같은 봄빛이 넘치고 있는지, 고향 동산에도 이 꽃이 똑같이 피어 있는지 묻고 있다. 서울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지난해 오늘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 여름에 유배를 와서 이듬해 봄이 되었으므로 '지난해 오늘'은 화자가 유배되기 전, 대전별감으로 화려하게 살던 때이다.

술동이의 술을 부어 꽃 꺾어 셈을 놓고

➡ 꽃가지 꺾어 셈을 한다는 것은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꽃가지를 꺾어서 그 수를 세어 마신 술의 잔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의 풍류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장진주[→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노래하여 무진무진(= 한없이) 먹자 할 제

내 번화[→ 번성함과 화려함]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 풍류와 즐거움 속에서 '꽃'을 즐기던 서울에서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올해 이 날에 눈물 뿌려 보는 꽃은

아침에 부족한 밥이 낮 못 되어 시장하니

박잔의 흐린 술[→ 품질이 떨어지는 술]이 값없이 쉬울쏜가

→ 투박한 잔에 흐린 술이라도 값없이 [얻기가] 쉽겠는가?

➡ '박잔의 흐린 술'은 조잡하고 값이 싼 술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극심한 궁핍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화자로서는 '박잔의 흐린 술'마저 값을 치를 돈이 없으니 쉽게 마실 수가 없다. 화자는 '꽃'뿐 아니라 '술'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현재를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하고 있다.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 수록 지문의 일곱 번째 행부터 제시된 '지난해 오늘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내 번화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와 그 뒤의 네 행 '올해 이 날에 눈물 뿌려 보는 꽃은~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는 구조가 대응된다. 즉 '지난해 오늘에'와 '올해 이 날에'가 서로 대응되는 시간을 제시하며, '웃음 웃어'와 '눈물 뿌려', '내 번화 즐김으로'와 '내 고생 슬픔으로' 등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와 시구가 서로 대응되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1년 사이에 달라져 버린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전년 꽃 올해 꽃이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는 다르도다

→ 지난해 사람, 올해 사람, 사람살이는 다르구나.

➡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일은 너무도 달라졌다는 한탄이다.

(중략)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돌(= 해마다 돌아오는 특정한 날의 횟수를 세는 단위)이로다

➡ 추자도에 유배를 온 지 1년이 지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작년에 베던 보리 올해 다시 베어 먹고

지난여름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받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

뛰는 생선 회를 친들 목에 넘어 들어가랴

➡ 유배지에서 벌써 1년을 보냈다는 생각에, 햇보리로 지은 밥과 싱싱한 생선도 먹을 기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워함도 남다르고 못 견딤도 유별나니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 년이라

➡ 유배는 기한이 없는 형벌인데, 겨우 1년을 채우고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화자는 자신의 설움과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1년 고생이 남의 10년 고생에 해당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족징기죄(足懲其罪, 죄에 걸맞도록 충분한 벌을 내림) 되올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고

➡ 이제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유배의 고통이 끝나고 다시 좋은 때를 맞이하기 바란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이해와 감상

고위 관직에 있다가 정치적 이유로 귀양살이하게 된 사대부의 유배 가사들은 대개 억울함과 변함없는 충심을 토로하는 데 치중하면서 유배 생활 자체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만언사」의 작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궁핍한 유배 생활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떳떳함을 드러내어 사면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호소하여 사면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2~34] 현대시

(가) 「밭머리에 서서」

– 박용래 –

작품 평가

읽기에 어렵지 않은 작품이지만, 시적 상황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시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려 하기보다, 회상 속 고향의 모습으로부터 화자의 심리와 태도를 읽는 데 집중하도록 하자.

제 1연

노랗게 속 차오르는 배추밭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 옛날에는 배추 꼬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움 속에서 찾아냈었나니

➡ 화자는 현재 배추밭의 이랑 끝에 서 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 마을에서 고향을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화자가 배추밭을 보며 과거의 고향에 대해 회상하는 것이다.

➡ 배추 꼬리는 배추의 뿌리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추를 활용할 때에는 잘라 내는 부분이지만, 화자는 이것이 맛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채소를 보관한 움 속에서 잘라 낸 배추 꼬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제 2연

하얗게 밑둥 드러내는 무밭머리에 서서
생각하노니
옛날에 옛날에는 무 꼬리 발에 채였었나니 아작아작 먹었었나니

➡ '무밭머리'도 '배추밭머리'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회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무 꼬리' 역시 '배추 꼬리'와 같이 소박한 먹을거리이지만, 그것들을 떠올리는 화자의 시선에는 과거를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추억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제 3연

달삭한 맛

➡ 과거의 맛을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맛에 대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추억이 물 밀 듯 밀려와 현재를 뒤덮는 상황을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4연

산모롱을 굽이도는 기적(汽笛) 소리에 떠나간 사람 얼굴도 스쳐 가나니 설핏 비껴가나니 풀무 불빛에 싸여 달덩이처럼

➡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행복했던 유년의 고향을 떠났을 것이고, 아마 화자 역시 그랬을 것이다.

➡ 화자가 현재 고향에 돌아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불빛'은 화자의 옛집 아궁이의 불빛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달덩이'는 옛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벅찬 감정이 아주 커져 버린 상황을 감각적으로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제 5연

오늘은
이마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故鄕)

➡ 화자는 고향에게 '이마 조아리며 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향'이 '이마 조아리며' 비는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4연에 제시된 '달덩이'의 이미지에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함축된 감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운 과거의 고향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